

2021. 4. 20.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4월 22일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4. 22.(목) 14:00, 15: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시 간
1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 (이명웅)	경기도 (이승엽)	14:00
2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 (이명웅)	경기도 (이승엽 외 1)	15:00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2부. 끝

보 도 자 료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공 개 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2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20. 7. 28. 접수된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 경기도가 2020. 6. 4. 청구인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1. 4. 2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경기도는 2020. 3. 30.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청구인 남양주시는 2020. 5. 부터 남양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 피청구인 경기도는 2020. 6. 4.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도내 시·군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였으나, 청구인 남양주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에서 제외하였다.
- 청구인 남양주시는 피청구인 경기도가 청구인 남양주시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약 70억원)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 7. 28.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 청구인 남양주시의 주장요지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체재 형식과 문언상,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이유만으로 70억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거절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피청구인 경기도의 주장요지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지역화폐 형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된다는 점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은 청구인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 기준에 의한 피청구인의 재량행사에 해당한다.

□ 주요 쟁점

- 청구인 남양주시의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을 이유로, 피청구인 경기도가 청구인 남양주시를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배분받을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또는 배분 제외 행위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심사기준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심사요소 및 배분 기준(지역화폐 형식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가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에 끼친 영향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조광한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 피청구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이재명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보 도 자 료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공 개 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2일(목) 15:00 대심판정에서, 2020. 11. 26. 접수된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한 후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실시한 감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뒤,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1. 4. 2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경기도는 2020. 11. 11. 청구인 남양주시에 ‘2020. 11. 16. ~ 조사 완료시까지 남양주시 및 市 산하기관에 대하여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 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한 후 2020. 11. 16.부터 남양주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청구인 남양주시장은 2020. 11. 23.부터 피청구인의 감사를 거부하는 한편, 위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상의 감사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6.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0. 12. 7. 이 사건 감사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1. 16.부터 2020. 12. 7.까지 실시한 감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 청구인 남양주시의 주장요지

-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사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 피청구인 경기도의 주장요지

- 피청구인은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법령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감사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 개시 이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감사 대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 이 사건 감사는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한 감사로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상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개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조광한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 피청구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이재명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허인성